

<국회토론회>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남인순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

목차

목차	2
프로그램	3
인사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4
인사말: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8
인사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10
인사말: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12
인사말: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14
인사말: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16
인사말: 강성희 국회의원(진보당)	18
발제1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법률적 쟁점 검토	20
발제2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28
토론문1	44
토론문2	46
토론문3: 재난조사기구 활동을 통해 본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반대 논리 검토	50
토론문4	56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58

프로그램

10:30	좌장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10:35	유가족 인사말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권한대행
10:40	인사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강성희 국회의원(진보당)
10:50	발제1	윤복남 변호사 / 민변 이태원참사 TF 단장
11:05	발제2	최희천 박사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11:20	토론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우필호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안전과장 행정안전부
11:50	종합토론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본부장 남인순 의원입니다.

오늘은 생때같은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중경상을 입은 10.29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235일째 되는 날입니다. 먼저 10.29이태원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강병원 의원님,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과 장혜영 의원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과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관심을 갖고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님, 발제를 하여 주실 민변 이태원참사TF 단장이신 윤복남 변호사님과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위

최희천 박사님, 그리고 토론을 하여주실 박주민 의원님과 용혜인 의원님, 우필호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안전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태원참사는 「재난안전관리법」상 사전 대비와 당일 대응조치 부실로 인한 후진국형 인재(人災)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없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235일의 시간이 지났지만,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이 무척 무겁고 고통스런 나날을 버티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식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일상이 무너져 내린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구도 성사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도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24시간 밤샘 농성을 하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정치는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정한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파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공식적인 추모공간과 유가족 소통공간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이유로 보석 석방되었음에도 출근하여, 희생자 유가족들이 출근 저지에 나서자 구청장실 출입을 봉쇄하고 경찰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하는 등 유가족들과 국민을 우롱하고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장은 이태원참사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우롱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국회가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심판을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0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앞장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 명의 동의를 이끌어 냈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모든 의원을 포함하여 183명의 의원들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발의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당론 발의로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183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것은,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해달라는 전 국민적인 여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꼬리자르기로 종결된 ‘특수본 수사’,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 미흡 및 답변 회피 등 정부 당국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이 어려웠던 ‘국정조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첫 112신고 대응 기록’ 조작했다는 의혹은 현재까지 경찰의 해명 및 제출 자료 역시 거짓 해명이거나 조작된 자료가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행안부는 이태원참사의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이 삭제됐다고 했다가 번복하질 않나, 소방청은 ‘긴급구조대응활동 종합평가보고서’를 무책임하게 맹탕으로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수차례 거짓 증언, 핸드폰 교체 등 용산구청 공무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용산구 참사인지 시점에 대한 모순된 증언 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기를 쓰고 구청으로 출근하는 등 관련 자료들을 인멸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냈으나 대검이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검찰 수사도 난망합니다.

미흡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함은 물론이고,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제인권규범’과 ‘피해자권리장전’에 기반하여 피해자들은 회합할 권리, 조력을 받을 권리, 진실을 알 권리 등 다양한 권리를 갖습니다. 피해자들이 진상규명부터 재발 방지 대책에 이르는 전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은 오로지 희생자들과 생존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특별법이며, ‘양심과 상식의 법안’입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으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이고,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부와 여당에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국회토론회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바람직한 특별법 제정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앞 농성과 릴레이 시민행진을 이어가며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계신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사회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
남인순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먼저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회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과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발의에 힘을 모아주신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라 더욱 뜻깊은 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응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수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끝내 그 질문에 응답하지 못했고, 결국 또 많은 수의 국민들이 10·29이태원참사라는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윤석열 정부는 10·29이태원참사의 완전한 해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반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정치법’, ‘과잉입법’ 등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무례한 발언으로 유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권리 보장입니다.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뿐 아니라, 다양한 방안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해나가겠습니다. 동시에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특별법이 조속히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병원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1029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제도개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1029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제도개선추진단장 박주민입니다.

지난 10·29이태원참사 발생 후,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73일 동안 수사했다던 특별수사본부는,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지만 결국 ‘윗선’에는 털끝만큼도 다가가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면죄부를 주었는데, 이런 식이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큰 책임을 지게 되고, 정작 막중한 권한을 지닌 윗선으로 갈수록 책임에서 벗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아직도 이 사건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대검찰청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기소까지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수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국정조사 역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마지못해 참여했던 국민의힘의 소극적인 모습은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 공무원들의 위증 의혹 및 ‘이상민 장관 지키기’에 급급한 듯한 답변 회피는 차마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이상민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포괄적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었지만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된 조사기구를 만들어 참사 당시의 진실을 밝혀야 참사 원인을 알 수 있고,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 특별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분명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공론화할 수 있고, 행정부에서 제기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위해 기꺼이 참여해 주신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님, 윤복남 변호사님, 최희천 박사님, 우필호 세월호안전과장(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님과 토론회 준비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1029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제도개선추진단장
박주민 국회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함께 공동주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29이태원참사로부터 벌써 8개월입니다. 그동안 70여 일의 경찰특수본 조사와 약 55일의 국정조사에서 우리는 이태원참사가 인재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피해 회복은 매우 부족하기만 합니다.

지난 4월 야4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주축으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발의되었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은 멈춰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구를 외면하고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회피하는 정부·여당의 행보는 이태원참사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마저 없는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의 정부·여당과 검·경으로는 이태원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지원 등을 명시한 「이태원참사진상규 특별법」 제정이 있어야 10.29이태원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권리보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앞당길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 되길 바랍니다. 좌장과 발제를 맡아주신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님, 윤복남 변호사님, 최희천 박사님을 비롯해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와 정의당은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은미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회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10.29** 이태원참사가 일어난지 반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을과 겨울, 봄을 거쳐 어느덧 여름을 맞이했지만, 참사를 둘러싼 진상규명과 온전한 피해 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전 국수본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못다 밝힌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지원과 권리를 분명히 규정하기 위해, **183**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발의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 입법청원 달성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주신 유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국회가 비로소 입법에 나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발의된 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며 더 이상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최근까지도 행안위원장 선출이 지연되면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 역시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여권에서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두고 ‘재난의 정쟁화’, ‘총선 대비 전략’, ‘국회 입법권 남용’과 같은 주장이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당은 피해자·유가족과의 소통에는 좀처럼 응답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특별법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부여당은 유가족·시민의 뜻과 단호히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사 책임자 중 한 사람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출근 중 유가족의 항의를 받자 경찰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고, 참사의 다른 책임자들 또한 재판에서의 법적 책임을 경감 받기 위해 여러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미흡했던 재난대응 체계를 바로잡아야 했을 서울시는 최근 경계경보 오발령을 내놓고도 뒤늦은 변명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가족들에게 쏟아지는 2차 가해 역시 여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29이태원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참사 재발 방지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계속된 논의 지연과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특별법이 계류중인 가운데, 하루빨리 국회가 특별법 제정 논의에 나설 수 있기 위한 공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토론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열띤 참여로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주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남인순·강병원·박주민·용혜인·강성희·강은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해 주신 좌장·토론자·발제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전 10.29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235일이 지났습니다. 참사로 희생된 159명의 명복을 빕니다. 참사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께도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여전히 죄책감과 트라우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생존자분들께도 안부를 건넵니다.

벌써 계절이 세 번이나 바뀌었지만 이태원참사에 대한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거리에 선 유가족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유가족들의 항의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하는 등 국가는 노골적으로 유가족에 대한 적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안무치한 국가의 모습에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 책임자에 대한 수사·재판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는 애초에 다루지 않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역시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이 줄줄이 보석 석방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책임 규명에만 기대어선 안된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해지고 있습니다. 참사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성역 없는 책임 규명,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대책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능, 무책임, 무공감으로 일관했던 지난 시간 동안 유가족분들께서는 특별법 발의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고,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찾아 설득하셨습니다. 그 결과, 183명의 의원님들께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태원 특별법 속의 기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여전히 여당의 무논리 훼방으로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팽개친 국가의 도리를 다해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야4당이 머리를 맞대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토론회는 단순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루는 것을 넘어, 국회, 특히 야당의 특별법 제정 의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특별법 반대에 야당이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과거에 야당이 공조하여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를 의결했을 때처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시 한 번 단호하게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회토론회를 주최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실효적인 논의 과정을 밟아 제정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저 역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어 비로소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참사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반갑습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이후 235번의 밤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실규명도 되지 않아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들이 매일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릴레이 시민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출근을 시작했고, 역대 최다 인원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5개 주요 정부 부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행안부는 ‘특조위’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참사 피해자의 후유증 치료를 위한 휴직 지원 조항에 대해 '정부 지원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가적으로 아무도 이태원참사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부가 재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사회적 참사에 대한 온전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유가족들의 아픔에 대해 사죄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와 정부는 유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급급합니다.

국회는 참사에 대한 책임을 더 미뤄선 안 됩니다.

국회는 유가족과 국민의 물음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를 넘은 합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보당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원내대표

강성희 국회의원

발제1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법률적 쟁점 검토

윤복남 변호사 / 민변 이태원참사TF 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TF

국회 토론회 “이태원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법률적 쟁점** 검토

윤복남 변호사 · 민변 이태원참사TF 단장

2023. 6. 20.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명칭]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 2023. 4. 20. 공동발의
- ◆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무소속 의원 **183명**
- ◆ **국민의힘** 의원 특별법발의 **0명**
- ◆ 2023. 6. 7.부터 현재 **국회 앞 농성**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이하 '특조위')	제3장 피해자의 권리보장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정의규정 • 피해자의 권리 •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조위 설치 • 독립기구 • 위원구성 • 활동기간 • 진상규명조사 • 청문회 실시 • 특별검사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구제심의위원회 • 피해자·피해지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 프로그램 • 추모시설 설치

정의 (제1장제2조)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적용 대상자

- 희생자 (제2항)** → **참사당시 사망한 사람**
 참사 이후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사망한 사람

- 피해자 (제3항)** → **유가족**
 참사 당시 구조자
 참사 당시 주변 거주자 및 지역 상인

제1장 총칙

피해자의 권리 (제1장제3조)

-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 생활지원 · 의료지원 · 법률지원 등
- 배상/보상을 받을 권리

제1장 총칙

특조위의 업무 (제2장제6조제2항)

-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참사 전후 정책결정 및 행정조치의 적정성 조사
- 재난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 수립
- 희생자·피해자의 피해 실태/구제방안
- 피해자의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



진상규명
재발방지
피해 실태 및 구제
'총체적인' 조사

제1장 총칙

특조위의 성격 및 활동기간 (제2장제7조,제10조)

- 성격 - 독립된 조사기구

참사에 책임있는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

- 활동기간

조사개시 후 1년
6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
3개월의 보고서 작성 기간

∴ 수행 업무까지 고려할 때 특조위는 '신속히' 마련되는 것이 중요

제2장 특조위

특조위 진상규명조사 절차 (제2장제2절)

- 진상규명조사(제25조) : 피해자의 신청으로 조사 가능
- 조사의 개시(제28조) : 특조위의 의결 ➡ 조사 개시 결정
- 조사의 방법(제29조)
 - ① 진술서 제출요구
 - ②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③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물건 보관
 - ④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 ⑤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제2장 특조위

피해자의 권리 보장 (제3장제1절,제2절)

- 피해구제심의위원회(제56조)
 - ▽ 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
 - ▽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의
-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제2절)
 - ①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지원(제62조)
 - ②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제63조)
 - ③ 심리상담 등(제64조)

제3장 권리 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 (제4장)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제70조)
 - ▽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
- 추모사업 등 시행(제72조)
 - ① 추모공원 조성
 - ② 추모기념관의 건립
 - ③ 추모기념관 자료 수집 등



제4장 공동체 회복

행안부 검토의견 반박

• 특조위는 현행 경찰 특수본, 검찰, 국정조사위와 기능 중복?

• 특조위가 필요한 이유:

- ①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
- ② 책임기관으로부터의 독립
- ③ 특수본, 검찰, 국정조사위는 제한적인 조사 범위 및 매우 짧은 조사기간

• 중대본, ‘10.29참사 피해자지원단’으로 피해자 지원 및 추모 사업 중?

- 중대본 : 작년(2022.12.2.) 가동중단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사실상 지원없음

[시청 분향소→국회] 159km 릴레이 시민행진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촉구 159km 릴레이 시민행진

6.8~7.1 매일(월~금) 오전 10시29분
서울광장 분향소 출발
단, 7(토)은 국회 앞에서 분향소까지 행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6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촉구하며 유가족들의 국회를 향한 159km 릴레이 행진이 함께 계속돼요. 행진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진상여명' 배지와 기념품을 드려요.

행진 코스
분향소 → 광화문 → 직심자법원 → 서부지법 → 공덕역 → 마포대교 → 국회의원 중앙당사 → 민주당 중앙당사 → 국회 앞 농성장

릴레이 행진 참가 신청
bit.ly/1029march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문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상규집 010-2779-9262, 이미현 010-9068-5132)

Q&A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2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최희천 박사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2023.6.20

최희천(ph.D)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

목차

1. 진상 규명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가
2. 정부 부처/기관 중심의 진상 규명의 한계
3. 사법적 프로세스가 가지는 진상규명의 한계
4.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의 한계
5. 진상규명 이외에 특별법이 필요한 사항들

1. 진상 규명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가

사회적 기능 관점에서 본 '진상 규명'의 필요성

-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사회와 정부 시스템이 그간 진상규명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 고찰하여 기존의 한계들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재난이 발생할 경우,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정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사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였고, 왜 피해가 확대되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과 검토가 필요. (개별적이고 미시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작동을 염두에 두고 그 범위와 관점이 설정되어야 함)
- 이러한 이유로 "진상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기 마련이며, 기존의 제도나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의 기능이 수행되는데, 진상규명의 방식이나 관점은 기존의 사례와 관행들을 답습하거나 진상규명의 기능들을 수행하는 각종 기구들의 목적이나 기능의 토대 위에서 작동할 수 밖에 없음
- 또한, 진상규명은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이므로, 참사의 법적, 정치적 책임 등 여러 사안들과 얽혀 있고, 정부 기관 등이 관여되어 있을 경우 진상 규명 과정은 복잡한 특성을 뱉 수 밖에 없음 (다양한 관점들의 충돌이나 프레임의 다양성)
- 따라서, "진상 규명"과 특별법과의 관련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원인조사 등 진상규명이라는 '사회적 기능'의 틀에서 관련된 한국 사회의 제도 전반의 맥락이나 논리를 검토해야 함

참고: 기존 제도적 기반 하에 행해지는 재난 진상규명 기능의 여러 형태

- 진상규명의 의미? 단순히 참사의 물리적 인과관계나 법적 책임 소재만을 밝히는 것을 넘어, 참사를 발생시키거나 피해를 확대하는 조직체계, 사회적 문화, 조직 관행, 참여자의 인식이나 판단 과정 등 사회 제도나 정부 시스템 등을 모두 아우르는 범위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함. 여기에서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음
- 재난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한 차원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의한 수사가 진행
- 재난이나 참사의 원인에 대한 조사는 별다른 법령이 없을 경우, 주로 관할권을 가진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에 의해 수행
- 여론이 높거나 사회적 압력이 큰 경우에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 국정조사 등을 통해 좀 더 진전되거나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정치적, 정책적 필요성 등에 의하여 독립된 조사위원회가 특별법 등에 기반하여 구성되어 운영되기도 함
- 이번 1029 참사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며, 그 과정에서 나온 쟁점들과 자료들은 진상규명의 기능도 일부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하지만, 진상규명이 주요 목적이 아니고 헌법적 책임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진상규명은 부차적인 기능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최 광의의 의미로는 언론이나 연구자들의 연구도 진상규명의 기능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음

5

2. 정부 부처/기관 중심의 진상 규명의 한계

우리나라의 재난사고조사 사례 (예시)



2015.12.4. 서해대교 교량 케이블 화재 사례

사고 현장을 점검 중인 서해대교 안전성검토위원회는 4일 “끊어진 케이블의 손상 정도가 심각해 현 상태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단 결과 서해대교 2번 주탑의 72번 케이블이 절단된 것 외에 56, 57번 케이블도 기능을 상실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71번 케이블에서도 피복 손상이 발견돼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추가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케이블 철거에 10일, 재설치에 10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일보. 15.12.5.

(홍성=연합뉴스) 한중구 기자 = 소방관 1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해대교 교량 케이블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5일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케이블 설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화재 신고 접수 뒤 한국도로공사 등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5.12.5.

한국도로공사는 서해대교 주탑 상판 케이블 화재 사고 이후 실시한 안전성검토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절단된 72번 케이블과 56번, 57번 케이블의 손상도 심각하게 서해대교의 안전한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4일 밝혔다. 뉴스1. 15.12.4.

-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 원 인규명이 이루어짐
- 정부기관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주로 관할권을 가진 정부부처나 산하기관이 조사를 수행함
- 주로 기술적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찾는 경향이 있음

7

우리나라 정부 조사위원회의 한계 (예시)

침몰 원인 밝혀질까...스텔라데이지호 5년 만에 해양심판 첫 심리

송고시간 | 2022-08-22 11:46

차근호 기자
기자 레인

| 부산해양안전심판원 오는 25일 절차 개시, 유가족 “철저한 조사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를 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만에 사고 원인을 밝힐 해양안전심판원 심리가 시작된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에 대한 해양 심판 첫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 행정심판인 해양 심판은 선박사고의 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선사 측의 과실이 확인 되면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민형사상 절차와는 별개로 해양 사건에 전문화된 심사관과 조사관들이 사고 원인을 가리고, 공법상 처분을 한다.

부산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사고 5년 만에 행정심판이 열리게 된 것은 그동안 객관적인 증거가 모이기를 기다린 측면도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것도 있었다”면서 “올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에 대한 특별조사 보고서 등도 나와 기일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 침몰 후 원인조사 등에 장시간 소요될 수 있음
- 관련 분야의 기술적 전문가들 중심이므로, 주로 기술적 차원에서 재난의 원인을 고찰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선방안 또한 기술적 중심의 한계
- 재난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피해지원 등 사회 회복력 관점은 부재함
- 해당 (산업)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는 특성에 따른 비판들도 존재함_조사 대상과의 관계 등

8

III. 다중밀집 인파사고 취약점 및 대책

- ◇ 금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하여 위험인지-대비-현장대응 등 단계별로 보완이 필요한 취약점 노출
- ◇ 유사사고 재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제도상 형식적 문제 및 미시적인 현장의 매뉴얼 문제로 치환하여 이해

1. 취약점

- '다중밀집 인파사고'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 존재
 -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유형에 '인파사고' 미포함
 - '인파사고'에 대한 정립된 매뉴얼 부재 및 개별 기관이 마련한 자체 지침도 형식적 관리, 인파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미정립
 - 주회자 없는 축제에 대해 지자체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미부과
- 위험인식 인지 및 사고 초기 보고-전파 체계 작동 미흡
 - 국민신고접수(경찰·소방 등), CCTV 등 다양 불구, 상황 분석·판단은 담당자에 의존
 - 기관 내·외부 경직된 보고 체계·문화
- 현장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 대응 부족
 - 사고 예방·대비·수습 과정에서 기초단계
 - 1차 대응기관간 유기적 협조 미흡, 구조·구급 및 응급 의료체계

◇ 관리체계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단편적인 기술적 해결책 제시

◇ 국가적 조정 시스템이 아닌 현장 지휘체계의 문제로 축소

2. 유사사고 재발 방지 대책

- 다중밀집 인파사고 관리의 제도화
 - (재난유형 포함)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의 체계적 관리 추진 (지침 등 마련) △다중운집 매뉴얼 전면개정(경찰청, 매뉴얼 명칭 변경 전담) △위험 상황별로 세분화된 국민행동요령 마련
 - (안전관리 의무) 주회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 신설 ※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재난안전법」상 의무 부여, 주회자 없는 축제·행사 안전관리지침(행안부) 마련
- 위험상황 체계적 분석 및 신속한 보고·전파체계 구축
 - (상황분석) 신고 없이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인파의 위험도를 분석해 예·경보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 지자체·대중교통·CCTV·드론 기반 데이터 수집 - GS 활용 밀집도 분석 - 위험시 예경보
 - 112·119 신고 상황판단 기준 개발·보급, AI 활용 재난 상황 분석 시스템 개발(신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긴급도 분류 등)
 - (경찰) 112 빅데이터 감지시스템 도입 / (소방) 119 빅데이터 활용 긴급신고 접수체계 고도화 (신속한 보고·전파) 평시 순차적 보고에서 재난시 차 상위자 직보 체계로 전환 운영, 상황실간 중요 재난상황 신속 공유
 - 문자의 경우, 긴급문자(크로스트) 발송 단계 개편(4단계 → 2단계), 재난문자 관련 지자체 상황실 근무자 대상 송출 교육·훈련 강화
- 현장 대응기관 협업체계 및 대응역량 강화
 - (지대본 강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기관(경찰·소방)이 참여하여 상황공유, 대규모 합동훈련 추진(연 2회)
 - (단체장 등 교육) 교육기관에 특별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재난 관리과정 교육 이수 의무화(참여 여부 공개)를 추진(23.3월-)
 - (상황공유) 긴급신고통합시스템 현장 정보 공유 관련 기능 추가, DMAT의 신속 출동을 위해 소방-DMAT간 정보 공유 강화

IV.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 소관안전분야(11.15~12.4) 기준 1,956건 소관 국안수첩(11.23~12.3) 중 240건

2.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주요 내용 (검토중)

- 재난 징후(재난위험요소)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
 - (위험 요소 발굴·관리) 신고접수, CCTV, 안전신문고,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집한 정보에 대한 다각적 분석으로 위험요소 상시 발굴
 - 연구원, 지자체, 민간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핵심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관리 방안 마련
 - ※ 신규 위험 요소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예경보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제작
 - (기후위기 대비)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양상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홍수예보체계, 기상 상황과 연계한 재난 예측 고도화 등 추진
-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
 - (재난관리 체계 개선)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중심의 실 효과적인 재난관리가 이뤄지도록 초기 대응 기관 간 협력체계 정비
 - 지역안전협의회 설치 및 경찰·소방 참여,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하는 자치경찰 아원화 모델 도입 추진(세종·강원·제주 시범 실시 '24년)

◇ 국가적 재난 시스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및 조직역량, 기관간 대응 시스템과 조정 시스템의 검토에 대한 고민은 잘 보이지 않고, 파편적인 내용들과 일선 현장의 문제만이 부각됨

- (현장 대응성 강화) 매뉴얼에 지역 위험특성 반영, 모바일·원페이지 매뉴얼 작성으로 활용성 제고, 시나리오 기반 현장 맞춤형 훈련 실시 ※ 소방병원 간 정보 연계 현장응급의료소장 역량 강화 등 현장 응급의료 개선
- 과학·디지털 기반 재난관리 강화
 - (CCTV 활용 제고) 지자체별 재난관리 목적 CCTV를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과 연계하여 공동 모니터링 추진
 - 지능형 CCTV 보급을 확대하여 행동 패턴, 이상 음원 등을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관제 체계로 전환
 - (시스템 구축) △지하공동구 관리 △산불 위험 예측 △사업장 사고 등 다양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데이터 통합 관리) 기관별 분산 관리되는 데이터의 통합적 수집·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공유플랫폼 구축, 데이터 개방 추진
 - * 58개 재난관리책임기관, 1,953종 재난 안전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24년)
- 안전문화 확산 및 제도적 뒷받침
 - (안전 문화) 안전 체험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 ※ 안전 관련 국민참여 창구 상설화, 우수제안 정책화 및 확산 추진
 - (피해지원) 복구지원비 상향조정 추진, 지원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일상 회복 지원
 - ※ 주택피해 복구비 상향, 소상공인 재난 피해 지원근거 마련 등
 - (예산 개선) 지자체 대상 합동 평가 안전관리 분야 지표 강화, 안전 예산 확충, 안전 지수 개선 등 추진

참사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 기능의 한계(파편적인 진단과 대책)와 원인

-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정부 기관(들)의 진상규명 기능이 가지는 '기술적 문제로 치환하려는 경향'이나 '협소한 문제 인식' 등의 한계가 나타나는 데에는 기술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 구성의 관행, 정부 시스템 자체의 문제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로 그 관점을 협소화시킬 수 밖에 없는 행정적 시각, 각 부처(부서)의 관할권의 한계 내에서 볼 수 밖에 없는 행정적 프로세스 등 정부 부처가 가지는 특성 자체에 원인이 있으므로, 스스로 그 한계를 극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난망
- 정부 기관의 원인조사와 대책 수립 등에 외부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의 전문가들은 주로 해당 정부 기관과 평소에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정부기관의 시각에서 검토하는 관행들이 있음 (문제의 인식이나 과제의 규정은 행정 관료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미 짜여진 프레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그러한 현상에 일조할 수 있음)
- 상기 원인규명이나 문제의 인식 이외에 대안의 마련에 있어서도 정부 대책은 행정 문서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다른 행정 문서들처럼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언어로 간략히 표현되는 특징이 있으며, (보고 용의) 단기적 관점을 가지고 작성되는 경향이 있음
- 참사에 대한 정부의 습관적인 반응과 구체적인 문제의식의 부재는 추상적인 "협업 강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신속 체계 구축" 등의 매우 추상적인 메시지로 구성된 공허한 대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11

참사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 기능의 한계(파편적인 진단과 대책)와 원인

- 이후, 행정문서에 기재한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부서별로 파편화된 관점과 문제의식 하에 연구용역 등의 형태로 구체화된 콘텐츠를 도출하여 활용하는 방식에 익숙하며, 이는 대책마련의 출발점부터 한계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음
- 예) 인파 사고에 있어 신종 재난이나 관할권이라는 주제에 과도하게 집착, 재난 관리 전체의 작동 체계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대신 현장 기관간의 협업 문제로 한정하는 시각 등
- 문제의 진단이 잘못되거나 생략될 경우 잘못된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문제확인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의 인식과 검토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의 정부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는 명백함
- 이에 더하여 기관 자체의 책임문제와 결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부의 강한 반발이나 부처 이기주의 문화 등에 의하여 '진상규명' 과정에서 본질적 문제들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국처럼 사고조사와 형사조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기관의 신뢰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아직 시기상조임)
- 이러한 정부부처 중심의 진상규명의 한계에 대하여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12

참사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 기능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입장

행정안전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반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들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5개 부처(행안부, 복지부, 노동부, 인사혁신처, 감사원)가 의견을 냈다. 모두 '이태원 특별법'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행안부가 취합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이 의견들은 '이태원 특별법' 관련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태원 특별법' 발의안의 핵심 내용인 특조위 설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희생자추모위원회 설치에 모두 반대했다. 국회에 낸 의견 자료에서 행안부는 "특조위의 진상규명 기능은 현행 경찰 특별수사본부, 검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기능의 중복과 비효율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행안부 소속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단' 등을 통해 이미 역할을 수행 중이다. 기능의 중복과 비효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 정부부처 중심의 진상규명의 한계에 대하여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으로 귀결되는데, 이는 내부에서는 정부기관 중심의 한계에 대해 논의 자체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 등 행정기관 자체가 가지는 특성에 기인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 "참사 피해자 치유 휴직에 정부 지원 불필요"

노동부는 '이태원 특별법' 발의안 내용 중 '피해자 치유 휴직 관련 정부 지원' 조항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치유 휴직의 실시 여부는 '노사 기안이나 정한 안이 시범기에 정부에 관련 기관과 협의한 안이 시범기였다'는 것이다. 뉴스스타 23. 6. 1.

13

참고: 우리나라 정부 조사위원회의 사례 및 독립성이 강화된 외국 사례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2017. 12. 21., 29명 사망자 발생)의 경우에는 소방청 내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음
- 아시아나항공 991편 추락 사고 (2011. 7. 28. 승무원 2명 전원 사망)이나 상왕십리역 전동열차 충돌탈선사고(2014. 5. 2.) 등 기차, 항공기의 사고의 경우에는 2006년에 설립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RAIB)가 담당
- 우리나라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RAIB)는 미국의 연방 교통안전 위원회(NTSB)와 유사하지만, NTSB는 독립 안전 위원회법(Independent Safety Board Act)에 의해 설립된 미국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우리의 경우보다 독립성이 높으며 해상사고 및 도로교통 대형사고까지 조사범위에 있어 관련 기관과 공조함
- 우리나라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RAIB)는 NTSB와 달리 해상사고와 자동차사고는 담당하지 않음
- 스텔라데이지호 참사(2017. 3. 31. 24명 탑승, 22명 실종(사실상 실종자 전원사망), 2명 구조)와 같은 해양재난의 경우에는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하며, 건축물 사고의 경우 국토부 산하의 국토안전관리원이 관할
- 우리의 정부조사위원회는 외국에 비하여 독립성이 약함

14

3. 사법적 프로세스가 가지는 진상규명의 한계

경찰/검찰 수사의 목적은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인가?

-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는 진상규명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일부 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진상규명을 통한 재난관리 및 국가 시스템의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엄격한 법적 논리에 바탕을 둔)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방지나 제도개선은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목적을 지님
- 수사의 경우에는 기존 법령이나 제도를 준수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기존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제도의 공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어짐
- 수사를 통해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 예) 재난 예방과 대응의 문제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현존하는 형법의 죄를 적용하기 위해 논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형법상 처벌은 보다 엄격한 인과관계가 적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규명하기 복잡한 시스템의 문제 대신 형법상의 죄에 얼마나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됨
- 따라서, 수사는 전체 시스템보다는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부분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사자료는 기소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작성됨
- 법상 구체적인 의무를 찾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경우 법령의 용어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괄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형사재판의 프로세스로는 현재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음

경찰/검찰 수사의 목적은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인가(형사재판과 현재 심판의 한계)?

-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한계임
- 참고로, 현재 심판의 진행을 보면, 각 쟁점들의 이해와 공방에 있어 법령상 단어나 문구 자체에 집착하는 모습들도 보이는데, 현행 법체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중첩적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난관리라는 정부기능과 시스템의 관점에서 고찰하지 않고 기존 형사재판처럼 기술된 용어를 단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 해석 중 취사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재난의 총괄·조정 역할”이라는 개념은 재난관리의 각 단계마다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음. 재난의 예방 단계에서는 ‘재난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일상적 관리의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예방이나 대비 단계에서 ‘총괄·조정’은 ‘압사 사고에 대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위험의 파악’이나 ‘관련 메뉴얼의 정비’를 위한 전국적 표준안의 마련이나 지자체의 관리상태 점검’ 활동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재난의 대응 단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참여 기관들의 정보를 통합하여 각 기관들이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기관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효과적으로 재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거나 정리하는 구체적 기능”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따라서, 법령의 용어들은 맥락에 맞게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17

참고: 부분적 관점의 한계와 전체 시스템 관점의 필요성

- 수사의 특성상 파편적이고 협소한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부분이 부각되어 전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 발생할 수 있음. (눈에 보이는 현장에 몰두하였고, 그 중에서도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에 과도하게 집중)
- 참사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재발방지과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재난 관리 전반에 걸쳐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기능의 작동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 조정이나 지원의 미비 등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로 인한 결과로서 ‘도로 혼잡의 지속’ 등을 검토해야 함



<경찰 수사의 관점>

VS.



<제도개선에 필요한 시스템의 관점>

18

경찰/검찰 수사의 목적은 재난관리 체계의 개선인가(형사재판과 현재 심판의 한계)?

- 예) 유사한 맥락에서 현재 재판부가 10대 쟁점으로 정리한 내용 중 하나인 “피청구인에게 다중 밀집 인파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이태원이라는 특정한 공간에 대하여 나타나는 의무” 및 “기존의 인파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행안부나 지자체 등을) 점검할 (관리상의) 의무”를 동시에 이해해야 함. (재난안전법의 근본 논리로 삼고 있는 ‘예방-대비-대응-복구’라는 재난관리 시스템의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을 경우 온전한 스펙트럼을 이해하기 어려움)
- 형사재판이나 헌법재판소 심판 또한, 그 목적이 현행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관점에서 경미하거나 법리 구성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지나칠 수 있음
-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의 기능적 관점에서는 단편적일 수도 있는) 재판이나 심판의 결과들이 제대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제도에서는 담당할 수 있는 기관들이 보이지 않음
-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재판-심판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기구의 부재와 관련하여, “수사-재판-심판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만일 이러한 자료들을 입수하였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에서 제도의 문제를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특별법의 진상규명 기구”를 전제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19

4.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의 한계

국정조사의 성과와 한계

- 국정조사는 형사책임 위주의 수사보다는 포괄적 관점을 가지며, 기존 정부 기관의 조사가 가지는 (산업계의) 협소한 인적 네트워크나 기술적 차원의 협소한 시각을 극복할 수 있는 등 참사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접근도 가능
-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정치적인 분위기에 반응하여 국민의 시선과 일치하려는 장점은 있지만, 동시에 그 시기의 분위기에 집중하게 되면 (정치적 이슈들이 부각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관심이 덜 할 수 있음
- 이번 국조는 재난관리 전반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까지 검토하였고, 중대본의 조정 역할의 문제 등 체계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하였지만, 당일 현장 인력의 배치와 활동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사항들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종료됨
- 이번 국정조사는 그 기간의 한계나 기관의 비협조로 자료제출이 되지 않는 등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증인들은 자신의 책임을 방어하는 태도가 부각되어 정치적 공방이 두드러졌음
- 국정조사에서 정부기관과 책임자들은 (특히 중요한 부분에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판단근거와 행위 대신 “잘 몰랐다”, “보고하였다”, “지시하였다”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최선을 다했다” 등 추상적인 답변으로 자신의 입장을 우선하였음

21

추가조사를 통한 국정조사 결과 보강의 필요성

- 국정조사 증인들의 진술 또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다차원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압사 등 인파사고의 위험성의 사전 인지” 여부를 ‘단순 인지했다, 하지 않았다’의 ○ X 로 결론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정부 기관들은 참사 당일에도 “인파사고의 위험을 몰랐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도 ○ X 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자료와 진술을 볼 때 “막연히 인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개별 요원들은 일부 인지하였는데 조직적 인식과 의사결정까지 이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정조사에서는 주로 책임자를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조직 내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일선기관과 담당자를 통한) 실제 기관의 행위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이외에도 관련된 담당자들의 인식과 판단 및 행위를 확인해야 함
- 따라서, 정확히 현장의 상황이 어떠한지, 누가 어디에 있었으며, 각자 어떤 판단을 가지고, 관련 직원들과 어떤 대화를 하였으며, 왜 현장의 인식이 조직에 확산되지 못하였는가를 파악해야, 무엇이 문제인지,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할 수 있음

22

국정조사에 나타난 정부의 인식과 태도의 문제

- 구체적 사실관계는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으며, 향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임
- 기관들의 빈약한 제출자료, 증인들의 엇갈린 주장들, 방어적인 답변 등으로 인하여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진실성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다시 확인하여야 함
- 참사에 이르게 된 과정과 문제점 및 제도의 미비까지 확인하여 향후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 인파사고 위험의 사전 인지 (여부범위) 및 조직 차원의 인식, 희생자들이 골목에 갇히게 되기까지의 과정, 당일 현장의 인력 배치 문제, 왜 급증하는 위험이 인지되지 못하였는가?, 희생자들의 현장 구조는 왜 더디게 이루어졌는가?, 관련 기관들의 대응 활동, 희생자 이송 및 조치의 문제들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객관적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며, 특별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음

23

참고. 규명되지 않은 “희생자 이송 및 조치의 문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질문(예시)

- 국정조사에서는 희생자의 이송과 조치에 대한 부분은 밝혀진 것이 많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들로, 여전히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기존 제도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 이하에서는 유가족들의 질문 일부를 그대로 발췌함
- 누가 용산다목적체육관으로 희생자를 옮기라 지시 했는가? 그리고, 거기서 전국의 병원으로 희생자를 다시 옮기라고 지시했는가?
- 왜? 우리 아이들이 서울 외곽 영안실에 있었나요? / 왜? 우리 아이가 영안실에서 모두 옷이 벗겨져 있었나요? / 왜? 아이 핸드폰이 용산경찰서에서 주웠다고 했는데 보호자가 주라고 하는데 수사중인 물건이라고 안주었는지? / 왜? 압사사고가 분명한데 마약검사를 진행하자고 하였는지? / 왜? 아이가 지금도 구급일지를 달라고 하는데도 확인이 안되는지? / 왜? 영안실에서 아이를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재촉을 하였는지?
- 신원확인 한 구급대원의 구급일지를 순천향병원에 아이를 인계할때 함께 인계 했음에도 변사체 처리한점 / 친구가 보호자로 구급차를 탔었고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부모가 구급대원의 연락을 받고 병원밖에 있었는데도 다시 신원조회를 한 점 / 부모보다 연고지 공무원이 더 먼저 마지막 안치된곳을 알게 된점 / 나체로 부모에게 인계된 점 / 검안과 검시를 두번씩 한점 / 마지막 검안 당시 부모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고 참여시키지 않은 점
- 사전 예고도 없이 경찰이 찾아와 미성년자인 아이만 병실에서 데리고 ... 보호자의 동행도 허락하지않았고 친구들의 생사문제로 극심한 혼란 상태였던 아이를 옆 병실로 데리고 가서 조사
- 참사당시 응급구조는 누구 지시로 움직였는지 위급한 아이들을 왜 먼저 옮기지 않은건지

24

5. 진상규명 이외에 특별법이 필요한 사항들(예시)

갈등 해소 등 사회 회복력(resilience)

-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갈등의 완화나 피해자의 권리보장까지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기능을 부여하여야 함
- 기존 참사 사례를 보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지속되었고, 참사 초기 정부지원의 한계와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 대구지하철화재,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재난 등 기존의 사례들을 보면, 정부의 대책이나 접근방법은 전혀 피해자나 지역사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피해자들의 분노와 상처를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음 (예,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시설의 명칭과 위치 선정에 관한 지역 갈등)
- 한국의 상황을 볼 때, 재난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이나 권리보장의 인지에 대해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고, 정부 또한 속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위축시키는 사례는 빈번하였음
- 원인규명과 관련해서는, 참사 초기부터 개입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함
- 피해자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고 사회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보장도 주요 기능으로 부여되어야 함

참고: 특별법의 쟁점에 내재된 관점의 검토

고용노동부, "참사 피해자 치유 휴직에 정부 지원 불필요"

노동부는 '이태원 특별법' 발의안 내용 중 '피해자 치유 휴직 관련 정부 지원' 조항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치유 휴직의 실시 여부는 '노사가 알아서 정할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거나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별법 발의안 66조와 67조에는 '참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사업주의 고용유지 비용의 일부 또

- ❖ "참사의 피해는 (온전히) 개인적 책임이므로, 국가나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시각과 연계됨
- ❖ 재난의 원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원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훨씬 크고, 공동체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므로, 선진국은 재난의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음
- ❖ 재난을 개인의 불운으로 돌리게 되면, 사회/정부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며, 공동체의 해체 초래

감사원, "이태원 특별법, 감사원 독립성 침해 우려"

감사원은 '이태원 특별법' 발의안에 있는 '감사원 감사 요구' 조항을 없애야 하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다. 특별법 발의안 34조에는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위 등을 적발했을 때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3개월 내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감사원은 국회에 낸 의견 자료에서 "감사원의 감사 권한은 헌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해당 조항은 감사원의 따라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불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 ❖ 특별법은 조사기구 등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외국과는 다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기인함. 감사요구권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음. 우리는 기존의 사회적 경험으로 참사의 책임에 대한 '사회정의'에 대한 요구가 높음
- ❖ 참고로, 외국은 조사 자료는 형사처벌의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제도가 있지만, 이는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등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와는 맞지 않음.
- ❖ 참고로 미국,일본은 '독립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과 따르지 않을 경우의 처벌조항도 규정'하는 강력한 조항들도 있음

27

공급자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에서 누락될 수 있는 거버넌스 관점

- 기존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정부의 공급자적 시각에서 국가기능의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정부의 시스템과 체계도 기존 관점의 연장선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이 때문에 기존법은 안전문제를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삼을 뿐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참사 발생시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제도개선을 이루어 내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음
- 또한, 재난의 대처는 정부 기관만으로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사회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하며 이 또한 거버넌스의 관점이 필요함.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국민들을 주체가 아닌 교육이나 홍보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또한 특별법은 기존 법체계가 가지는 관점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점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예, 독립조사기구, 생명안전기본법 등)
- 특별법 제정 후에는 이러한 고민을 담아 그 구조와 운영을 구체화해야 함

28

Q & A

박주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1029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제도개선추진단장

1.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왜 필요한가?

1) 경·검 수사와 국정조사의 미진함

-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지휘했던 ‘특수본 수사’는 내생적 한계가 명확함. 우려했던 대로 특수본 수사는 우선 책임이 빠진 ‘꼬리 자르기’ 수사로 종결됨.
-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법적 책임은 용산구청과 관할 경찰·소방 등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데 그침.
- 참사 전후 인파 통제의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구속 없이 검찰 송치되었고, 검찰 기소 역시 미뤄지고 있음.
- 지지부진한 수사·재판으로 인해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 줄줄이 보석 석방 중.

- 국회의 국정조사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지나치게 단축된 국정조사 기간과 여당의 조직적 방해,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해태로 인해 추가적인 조사 불가피.
- 특히, 참사 이후 유가족이 가장 원하던 구조 당시의 상황 등은 거의 밝혀지지 못했음.
-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참사에 대해서 이론적·과학적으로 결론을 명확히 하기보단 여러 지적과 사실을 나열·병기하는 데 그침.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하나의 합리적 진실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2) 책임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피해자 권리 보장 필요

- 10·29이태원참사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 재난관리체계의 붕괴에 있음. 따라서 단순히 형사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재난전문가들의 총체적인 조사를 통해 구조적인 원인을 찾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이어져야 함.
- 정부가 내놓는 후속 대책은 재난 안전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것이 아닌, 압사 사고에 관한 법령과 매뉴얼 개정에만 그치고 있음.

- 정부 기관에서 제출된 유일한 내부 평가인 서울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 대응 활동 종합평가보고서> 역시 평가 근거 자료가 부실한 피상적인 평가에 그쳤음.
- 풀리지 않은 수많은 의문들을 한 치의 공백도 남기지 않고 검증하고, 이를 통한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수적임.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후속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하기 위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필요함.

- 10·29이태원참사의 종대본은 2022년 12월 2월부로 종료됐고, 행안부 소속 10.29 참사 피해자지원단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유족들과 소통이 끊어지는 등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
- 법령을 통해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과 공동체 회복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2.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회는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

1) 실효성 있는 특조위 구성

-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사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자료제출 관련) 국정조사 당시 자료제출요구가 무력화되었던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국가기관이 책임있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는 조치는 필수적임. 따라서 정부 기관이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자료 제출과 열람에 비협조적일 경우에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조항 필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되어야 함.
- (감사원 요구, 특별검사 수사 등)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감사원 요구 조항과 특별검사 수사 요구 조항과 관련하여 정부·여당은 ‘국회 입법 오남용’이라고 호도하고 있음. 하지만 특조위 조차로 추가적인 징계 사유나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사 및 수사를 요구하는 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임. 이미 세월호 특별법, 사참위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임.

2)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 공동체 회복

- 해당 법안은 보다 포괄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참사를 공식적으로 추모하기 위한 희생자추모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희생자추모위원회의 피해자 지원 및 추모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중대본을 통해 수행 중이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
- 하지만 현재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참사 초반 유가족·피해자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던 지원정책을 끝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에 대한 사항을 정부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닌 명확하게 법령으로서 규정해야 함.
-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역시 다양한 피해자, 피해집단, 피해지역 지원 방침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 폭넓은 피해지원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제언했으며, 희생자들을 공적으로 추모하고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추모 방안이 명확하게 법령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를 법제화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함.

3) 연속성, 강제성 있는 이행 권고 조치

- 지난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국회는 정부 기관에 시정처리결과 제출을 요구했으나, 국회 국정조사 처리결과보고서의 주문 내용이 형식상으로 너무 간단하며, 시정조치의 강제성이 떨어짐. 따라서 관계기관은 국조 이후에도 시정조치 결과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답변 역시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음.
- 관계기관들은 내부 조사/감사를 통한 징계절차 요구에 이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겠다고 답하거나, 기존의 처리 내용을 반복하는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함.
- 심지어, 대통령실(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은 제출을 거부했고, 행정안전부는 매우 이례적으로 시정처리결과 뒤에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결과를 ‘정정’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첨부하기까지 함.
-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진상조사 과정을 거쳐 특별법에 따라 정책 수정·법령 개정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포함해 해당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음. 구체적인 조사와 이에 따른 강제적 이행 권고로 관계기관의 시정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 5만 명의 국민의 동의와 18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되었지만,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은 속의기간이 훌쩍지났음에도 여전히 여당의 무논리 뒤편으로 인해 상임위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음.
-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은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에 따라 속려기간 20일이 지났음에도 30일 동안 상정되지 않은 의안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이를 자동 상정하여 심사 일정을 즉시 개시하여야 함.
- 21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음. 임기 내에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6월 내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에 따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안임. 이에 야4당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어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 방안을 협의해야 함.
- 정부·여당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전면 반대하고 있는 조건에서 야당이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10·29이태원참사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를 의결했을 때처럼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시 한 번 단호하게 힘을 모아야 할 때임.

토론문3: 재난조사기구 활동을 통해 본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반대 논리 검토

우필호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안전과장

1. 발제 내용과 관련

- 윤복남 변호사님과 최희천 소장님, 두 분의 발제 내용에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 이미 두 분의 발제를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법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다루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사회적참사 특조위 등의 조사기구에서 조사 실무 등을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강조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 「사회적참사 특별법」 등과의 비교 관련

- 이번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은 같은 사회적 재난인 가습기살균제참사와 세월호참사를 다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 특별법」)이나 이전의 특별법 등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 우선, 「사회적참사 특별법」에서 처음으로 법 조항에 피해자의 권리(제3조)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제1호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제2호의 차별받지 않고 형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제3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제4호의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가 그것입니다.
- 이러한 조항은 피해구제만을 다룬 특별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도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 물론 이러한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나 제11조, 제17조, 제34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에 포함되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사회적 재난 관련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제2조(정의)의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회적참사 특별법」 등이 “희생자”를 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참사 이후의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 수립을 어렵게 했던 부분이 보완되었습니다. 또 참사 “피해자”를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이외에 3촌 이내의 혈족을 포함하여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없는 희생자를 고려했고, 참사의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거나 지역에서 거주 또는 근로활동을 하였던 사람 등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재난으로서 참사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이루려 한 점입니다.

○ 그리고, 제8조(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조사위원회와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입니다.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가습기와 세월호 두 참사를 다루고 있음에도 위원 구성을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에 불과하여,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의 특성상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의 논의 구조에 적절히 참여시킬 수 없었던 것에 비해 이제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에 법률전문가나 조사전문가 뿐 아니라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소방이나 응급의학 등의 긴급구조 등 재난 분야의 전문가들도 충분히 참여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추천위원회를 통해 하도록 하고, 추천위원에 희생자가족대표를 포함함으로써 정당이나 정당 입장 중심의 정당 추천 구조로 인한 외부의 정치구도가 위원회 내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일부 보완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내용이 강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 정부 부처와 일부 언론 등에서 논란이 되는 수사 기관 고발 및 수사요청(제32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제34조), 청문회의 실시(제36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제44조) 등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참사 특별법」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새롭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 이 밖에 「사회적참사 특별법」 등에서 없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49조) 조항을 법조항에서 신설하여 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3.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반대 의견 관련

○ 행안부 등 5개 정부 부처와 언론 등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으로 확인됩니다.

○ 행안부의 부정적 입장 가운데 주된 이유는 현행 경찰 특별수사본부, 검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과 기능 중복 문제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러 의혹 등에서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의 논리로 보면 기존의 각종 특별 조사기구 등도 기존 기관들과의 기능 중복에 해당되어 불필요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행안부의 이러한 논리는 한편으로는 과거 조사 기구들의 역할을 부인하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재난 조사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현행 특별수사본부나 검찰 등의 조사는 사람에 대한 형사적 처벌 여부에 중점을 둔 범죄 수사에 집중하다 보니, 최희천 소장의 발제 내용에서도 누누이 강조되었듯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 이외에 이러한 원인을 유발한 참사의 복합적이고, 제도적이고, 관행적인 요인 등 구조적 원인 규명에 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분석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나 세월호참사, 10·29이태원참사 등과 같은 대형 사회적 재난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단순한 개인의 실수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의 미비, 그리고 조직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까지를 담당할 특별조사기구의 존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구는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재난 참사로부터 사회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 또 감사원은 “특조위의 ‘감사원 감사요구’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법체계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일부 언론 등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의 이러한 감사원 감사요구 권한을 포함한 검경수사 및 특별검사 요청, 청문회 등의 권한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나, 이는 이번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어졌고, 법에 담겨진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사회적참사 특조위 운영 과정에서도 이러한 권한 행사가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 이 밖에 이미 사고 관리와 예방, 현장 대응을 제대로 못한 서울경찰청장, 용산서장, 구청장 등 23명을 기소한 수사결과가 나와 있고 일부 재판이나 심판이 진행 중이고, 새로 밝혀질 ‘진상’이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가 수사 등을 통해 “다중밀집에 의한 압사사고로 판명됐다”고 하지만, 그러한 다중밀집에 의한 압사사고가 발생하게 된 직, 간접적인 원인에 대한 충분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 않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일부 재판이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 10·29이태원참사는 대응 과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상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관련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제15조의2)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나,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재난안전상황실(제18조)과 재난 상황보고(제20조)의 부실 문제 등이 골든타임 내의 구조 실패 등에 영향을 준 사항 등에 대한 진상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재난대비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제34조의6)의 문제,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제34조의8),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제34조의9) 등과 재난 대응 관련 응급조치(제37조)나 긴급구조(제51조) 과정에서의 경보의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등의 문제, 응급조치와 구호,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긴급통제단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지휘 및 협력의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여야 합의를 통한 조속한 법 제정을 기대하며

○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그 동안의 정부기구 조사 등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 조사이고, 여전히 피해자 및 많은 국민들이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참사에 대한 남은 의혹 등을 이대로 덮고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정부 여당에서는 “이태원참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만 소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수용하여

10·29이태원참사의 남은 진상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재난에 대한 국가 등의 책임을 다하는 일일 것입니다.

- 또 그동안의 재난 참사를 통해 조금씩 개정되어 오기도 하였지만, 이번 10·29이태원참사를 거울삼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좀 더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도 종합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 법안의 목적대로,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뿐 아니라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됨으로써 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215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29이태원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또는 10·29이태원참사 이후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3촌 이내의 혈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장소에 체류하였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다.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라. 10·29이태원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였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마.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바.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피해지역”이란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5. “희생자가족대표”란 100인 이상의 유가족이 포함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 · 의료지원 · 심리치료지원 · 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 · 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0 · 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10 · 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10 · 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10 · 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 · 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 · 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0 · 29이태원참사 전후 국가등의 정책결정과 행정조치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수습 · 복구 과정에서 사건 은폐, 피해자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10·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조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9조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17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 추천위원회)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6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3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3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추천하는 3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하여 구성한다.

③ 국회의장은 추천위원회에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추천위원회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 후보자 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 ⑤ 추천위원회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추천하지 아니하여 후보자 결원이 있는 경우 결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은 희생자가족대표가 갖는다.
- 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⑦ 추천위원회가 위원 후보자 전원을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8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52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2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조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된 사람

4. 10·29이태원참사에 직접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피해자는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의 공개) ① 조사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①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사무처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피해자를 포함하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조사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징계위원회) ① 조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4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국가기관등이 파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진상규명조사

제25조(진상규명조사)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조사신청) ① 제25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을 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각하결정)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제28조(조사의 개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제6조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② 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구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3.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⑧ 조사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등의 열람등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동행명령) ① 조사위원회는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조사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조사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조사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①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의 면담조서, 조사보고서 등 해당 의뢰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조사위원회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조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34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제35조(공소시효의 정지) 10·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10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제3절 청문회

제36조(청문회의 실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국가 등의 지원) 조사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① 조사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① 조사위원회로부터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로부터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0조(증인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41조(증인등에 대한 동행명령) ① 조사위원회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등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할 때에는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③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등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인등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해당 증인등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등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 동행명령장은 조사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⑥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증인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조사위원회 소속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한다.

⑦ 현역군인인 증인등이 영내(營內)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조사위원회 소속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42조(증인등의 보호) ① 증인등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등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43조(검증) ① 조사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10·29이태원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특별검사 임명 등

제44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요청을 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를 요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③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안건은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제45조(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조사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공익신고자등 보호) ① 이 법에 따른 조사의 새로운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으로 본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50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51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2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10·29이태원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기타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4. 희생자 및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6.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 지원에 필요한 조치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권고내용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한다.

⑥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⑨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⑩ 조사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⑪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⑫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조사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10·29이태원참사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의 설치·운영 및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10·29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①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55조에 따른 조사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에 그 자료의 사본을 제74조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자료 송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자료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조사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3장 피해자의 권리 보장

제1절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56조(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

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1.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배상 및 보상업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5.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재심의) ① 제58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등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제60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1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희생자가족대표를 포함한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2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10·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3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10·

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70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적·인종·종교·성별·나이·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71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국가등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피해자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를 만나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2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등은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 추가 진상조사·연구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의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추모비의 건립
6.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의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73조(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2. 제76조에 따른 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희생자가족대표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 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⑥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① 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②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 참사 현장 인근으로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제75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재단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10·29이태원참사의 추가 진상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등은 제72조에 따라 조성·건립된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76조에 의한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78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은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등의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9조(비밀준수 의무) 조사위원회·심의위원회 또는 추모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조사위원회등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조사위원회등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2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3조(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① 국가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이하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사본을 기념관에 제공하여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가 해당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열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8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사위원회등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5조(벌칙) ① 조사위원회등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 감정인
6. 증인등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9조를 위반하여 조사위원회등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 · 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3.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따른 조사를 방해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고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제8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 ·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회의장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9조제2항에 따른 9명의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3분의 2이상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포함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국회토론회>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발행일 2023.06.20.

발행처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담당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2-723-5302 tsc@pspd.org

※ 본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